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9
----------	----

2022. 10. 17.(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2년 10월 5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12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10월 17일

-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두환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 사전 공표대상 정보를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정보공개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을 통해 도민의 정보공개 청구 기회를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위임근거 명확화 (안 제1조)

- 목적규정에서 조례의 제정 근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외에도 같은 법 시행령을 추가

○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한 절차 등 개선 (안 제5조제3항)

- 사전 공표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변경

○ 정보공개심의회 명칭 및 구성 관련 규정 정비

(안 제9조 및 제10조제3항제2호 단서)

- 심의회 명칭을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회”로 명확히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맞지 않는 위촉직 위원의 구성 관련 조항 삭제

○ 수당 등에 대한 지급 근거 명확화 (안 제14조)

-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만 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어 회의에 참석한 진술인에 대해서도 위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

○ 정보공개 수수료 조정 (안 별표)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수수료 감액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1GB마다 800원’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서정호)

○ 안 제1조(조례의 위임근거 명확화)

- 상위법률인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위임근거를 두고 있어 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을 추가하여 조례 위임근거를 명확화하는 것은 타당한 개정 조치라 판단 됨.

○ 안 제5조제3항(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한 절차 등 개선)

- 현행 조례 제5조제3항은 공표정보의 게재 및 주요 공표목록과 공표주기, 시기, 방법을 「충청북도 정보공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내용을 정하는 주체가 없어 심의가 다소 부족할 수 있다고 보여짐.

-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3항은 사전 공표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 방법 등을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회의에서 심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여 주체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과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 됨.

○ 안 제9조 및 제10조제3항제2호 단서(정보공개심의회의 명칭 및 구성 관련 규정 정비)

- 기존 조례 제9조의 “정보공개심의회의”명칭을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회의”로 명확히 하는 것은 조례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하는 타당한 조치임.

- 현행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의의 위촉직 위원의 자격과 구성비율을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위촉직 위원의 30%이상을 여성으로 한다고 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과 배치됨에 따라 30%이상 여성 비율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며, 특정 성별의 구성비율을 규정하지 않더라도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 구성되므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됨.

○ 안 제12조제3호 신설(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구체화)

-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3항은 사전 공표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 방법 등을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범위를 규정한 제12조제3호에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개정 조치는 타당함.
- 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수당 등에 대한 지급 근거 명확화)
 -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만 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어 회의에 참석한 진술인에 대해서도 위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적 조치로 판단 됨.
- 정보공개수수료 별표(정보공개수수료 중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감액)
 - 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한 정보공개수수료 중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수수료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 시·도의 조례 운영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시·도가 시행규칙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정보공개수수료 중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수수료 변경은 필요적 조치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정보공개심의회”를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회”로 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조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및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예산”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심의회에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정보공개심의회에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회에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u>」 및 <u>같은 법 시행령</u>----- ----- -----.</p>
<p>제5조(정보의 공표) ①·② (생략) ③ <u>공표정보는 연 1회 이상 공표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수시로 최근 자료로 수정하여 도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주요 공표목록 및 공표 주기, 시기,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5조(정보의 공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u></p>
<p>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도지사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u>정보공개심의회</u>(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 ----- ----- <u>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회</u>-----.</p>
<p>제10조(심의회 구성) ①·② (생략)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위촉직 위원 : 대학교수, 언</p>	<p>제10조(심의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p>

론인, 변호사, 사회단체 대표 등 정보공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만, 위촉직 위원은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제12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생략)

<신설>

3. (생략)

제14조(수당 등) 심의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를 제외한 심의회참석 위원 및 진술인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및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 . <단서 삭제>

제12조(심의사항)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5조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4조(수당 등) ① -----

----- 예산 -----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별표]

정보공개 수수료(제8조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150원

	-1컷마다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발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② 이하 생략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③ 이하 생략

□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규칙 및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로 한다.

② 각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①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수당을,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건심사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과 충청북도 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다.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각종 위원회 :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을 통해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정보 제공 시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수수료를 감액함에 따라 세입(세외수입) 감소

3. 관련조문

- 정보공개 수수료 조정 (안 별표)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수수료: '1건(700MB)마다 5,000원,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1GB마다 800원'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준: 최근 4년(2018년~2021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 공개 건수 중 평균건수
- 평균건수: 연 10건 기준(건당 700MB 이하)
 - ※ 2018년 16건, 2019년 6건, 2021년 5건
- 추계기간: 향후 5년(2022년~2026년)

나. 추계 결과: 5년간 총 210천원 세입감소할 것으로 추정

- 산출과정: 현행조례 기준 수수료 - 개정조례안 기준 수수료
= 평균건수 × (현행 수수료* - 개정 수수료**)
 - * 1건(700MB)마다 5,000원,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 1GB마다 800원

○ 산출내역

(단위: 천원)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합계
세입감소액 (A-B)	△ 42	△ 42	△ 42	△ 42	△ 42	△ 210
현행조례 (A)	50	50	50	50	50	250
개정조례 안 (B)	8	8	8	8	8	40

다. 재원조달방안: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에 해당하여 별도 예산을
수반하지 않음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천원)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합계
세 입	△ 42	△ 42	△ 42	△ 42	△ 42	△ 210
지방세외 수입	△ 42	△ 42	△ 42	△ 42	△ 42	△ 210
세 출	-	-	-	-	-	-
-	-	-	-	-	-	-